

亞細亞 太平洋地域 國立圖書館 發展에 關한 쎄미나에 參席하고

國立中央圖書館長 崔 洛 久

1958年 비엔나에서 開催된 바 있는 “유럽” 地域 圖書館 “심포지움”에 크게鼓舞된 바 있으며 또한 亞細亞 및 太平洋地域 圖書館의 希望에 따라 유네스코와 비율빈政府의 共同主催로 1964年 2月 3日부터 15일까지 13日間에 결쳐 亞細亞·太平洋地域 國立圖書館 發展을 爲한 쎄미나가 비율빈 “마니라”에서 開催되었다. 이 會議에는 亞細亞·太平洋地域의 21個招請國中 아프카니스탄·濱州·씨론·中國·香港·印度·韓國·인도네시아·이란·日本·라오스·이스라엘·네팔·뉴저랜드·파키스탄·비율빈·泰國·越南 等 18個國이 參席하였고 베마·캄보디아·말레이지아·몽고等의 4個國은 參席하지 아니하였다. 옵서버로서는 벨지움의 「브리튼」에 있는 王室圖書館長과 美國國會圖書館 副館長 방곡의 E C A F E(亞細亞 極東經濟委員會) 圖書館, 亞細亞財團, 國際書誌聯盟(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國際圖書館協會聯盟(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록펠라財團, 그리고 런던大學의 東洋學 및 아프리카 研究學校의 圖書館等이 參席하였다. 韓國에서는 本人이 韓國代表로 갔으며 參加人으로는 文教部職員으로서 現在 비율빈大學에서 教職의 再教育에 關한

敎育을 받고 있는 宋福周氏가 參席하였고, 國立圖書館이 아직 設置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國立圖書館의 役割을 하고 있는 圖書館이 參席하였다.

議長으로는 「캐사반」氏가 副議長에는 「키리노」氏 準備委員長에는 「아베라」氏가 指名되었으며 會議中에는 貞熟한 討議가 거듭되었다.

開會壁頭에 유네스코本部 圖書館長인 「피터슨」氏는 宣言文을 通하여 이번 「쎄미나」는 國立圖書館이 遂行해야 할 機能에 關한 最終的인 結論을 얻는데 目的을 두어야 하며, 國家는 國立圖書館의 發展을 促進하는데 責任을 져야한다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分明히 建議하는데 뜻이 있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쎄미나 첫 날과 둘째 날에는 參加國이 各各自己 나라의 國立圖書館 現況과 將來의 展望에 對한 報告와 이에 對한 質疑가 있었다. 다음에는 會議體를 全體會議와 準備委員會로 나누었는데 準備委員會는 議長團 및 報告者等의 自動委員과 香港·아프카니스탄의 推薦委員으로서 構成되었으며, 準備委員會에서는 會議의 案件 및 進行方向等의 草案을 擬定하였고 必要할 때는 會議始作前의 아침이나 或은 끝난 뒤의 짧막한 時間을 利用하여 二·三次 會議가

있었을뿐 討議는 全體會議에서 進行되었다.

大部分의 國家는 古代文化와 圖書館의 傳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文化的인 遺產이 살아 있다 할지라도 現代國家의 圖書館은 直接 그 遺產으로부터 成長된 것이 아니라 國家의in 意識을 自覺하는 데서 부터 育成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世界 76個 國立圖書館中에 22個가 亞細亞에 있다. 亞細亞 太平洋地域의 國家는 規模나 人口, 富에 있어서 매우 크며 이들의 國立圖書館은 어떤面에 있어서는 類似한 點이 있지는마는 이들의 各要素에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圖書館의 樣態는 그의 歷史와 規模·成長過程·現在條件·豫算·機能과 建物에 있어서 分明히 相異하다.

그러나 同地域의 國立圖書館들은豫算·사서교육·書誌活動·收書·言語·底質의 圖書·氣候等에 있어서 共通된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代表者들은 特別히 自己나라의 圖書館由來外 奉仕活動面에서 热誠을 表明하는 모습은 놀라웠으나 大體로 아직도 發展途上에 있는 亞細亞地域의 國立圖書館의 制限된 人員과 財政으로써 增加되는 國際的 資料蒐集과 現代的인 奉仕活動에 苦憊하고 있는 隘路點은 숨길 수 없는 共通的인 苦衷이었다.

本格的인 例外나는 國立圖書館의 機能이라는 問題부터 始作되었는데 國會도서관과 公共도서관 大學도서관의 機能도 兼하여 言及되었다.

圖書館은 各已 그 機能에 따라 國立도서관 公共도서관 大學도서관등으로 區分되어야함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나 未開發

國家에 있어서는 經濟的 또는 그밖의 諸般事情으로 아직도 國立도서관이 公共乃至 大學도서관의 役割을 兼하는 나라도 있고, 또는 國립도서관이 缺으로 公共이나 大學도서관에서 國立도서관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나라도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國立도서관의 基本機能이 瘋瘽 또는 壓失되는 傾向이 있으니 國立도서관이 아직 없는 나라는 조속히 設立되어야 한다고 強調되었다.

國立도서관의 기능은 그 나라의 社會·文化·經濟 및 地理等의 諸條件에 依하여多少의 差異는 있으나, 어쨌든 그나라 圖書館發展에 미치는 影響이 큰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번 例外에서는 露은 意味에서 國립도서관의 기능을

1. 한 나라의 도서관 사이에 統率力を 갖는다.
2. 그 나라의 모든 出版物을 永久保存하는데 奉仕
3. 他種의 모든 圖書館 資料를 蒐集
4. 書誌의 奉仕
5. 調停機構(Coordinating Center)로서 協力的 活動을 爲한 奉仕
6. 政府活動에 奉仕等을 採擇하고 細部의in 것은 다음과 같이 論議되었다.

1. 收書

國立圖書館은 그 나라의 모든 出版物을 完全 蒐集하여 永久保存해야 한다. 따라서 印刷物·視聽覺資料를 包含하는 모든 資料에 對해서는 無償納本이 되도록 法에서 保障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國外에 있어서도 自己 나라에 關係되는 모든 圖書資料는 언제 어디서 出版되었든간에 蒐集保存해야하며, 그 밖에 모든 文化를

象徵하는 文獻의 수집과 調査研究 照會等의 目的을 為한 抱括的인 主題索引까지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나라의 모든 出版物을 빠짐없이 萬集하여 永久保存해야함은 國立도서관의 任務中에서도 가장 큰 任務인 것이다. 그러나 事實上 刊行物의 全部를 完全 萬集한다는 것은 困難한 일이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豫算에 制限을 받을 것이고 둘째 收書情報擔當의 職員數에 制限을 받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國立도서관에서는 特히 國家文化關係 資料와 그 資料를 中心으로 收書를 하는 어떤 方針을 세워야하며, 司書職員間에는 恒常 收書를 為한 情報를 交換함이 또한 重要하다고 했다. 圖書의 國際交換에 關해서도 論議가 있었는데 I F L A 代表이며 런던大學의 東洋學科 圖書館長인 James D. Pearson씨는 交換보다 直接購入하는 것이 低廉하지 않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美國國會圖書館 副館長은 쏜다는 交換制度外에는 書籍購入이 困難하다는 것과 外換事情이 困難한 나라가 많으므로 交換制度는 亦是 必要하다는 衆意에 依하여 存續해 되었다. 國際交換을 더욱 敏活하게 하기 為하여 유네스코가 主動하여 書籍目錄을 作成하고, 英文으로 번역 出版을 하라는 發言도 있었으나, 유네스코會長代理인 도서관장은豫算不足으로 困難할 뿐만아니라 그러한 問題는 國家書誌目錄을 作成交換하면 各國家間에서能히 解決될 수 있다고 答辯하자 이스라엘 代表로부터 國家書誌目錄의 作成交換은 1958年 비엔나會議에서의 建議事項인데 履行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問題가 된다고 言혔다. 그리고 도서 購入費의豫算策

定에 있어서 國民의 1人當의 基準을 세우자는 提議가 있어 좋은 案이기는 하나 각 國家들의 經濟的事情이 相異함으로 困難하다고 結論되었다.

政府刊行物은 國內用 및 國際交換用으로相當한 部數를 收書해야하며 科學 및 技術系書籍의 收書도 國立도서관 또는 그 代行機關이 해야한다고 했는데, 一部側에서는 科學分野의 도서관 기능과 重複이되지 않느냐(따라서 納本도 重複)고 하였으나, 國立도서관과의 重複은勿論이고 科學分野의 同質의in 도서관끼리도 各分野間의 明白한 區分이 困難(例, 醫學은 生物·原子力科學等과 關連·分離困難)함으로 重複이 不可避하며, 中央도서관은 総合目錄(Union Catalog)에 依하여 各種特殊도서관의 장서를 통괄하여야 한다고 美國國會도서관 副관장은 말했다.

議長은 그러나 國立도서관이 支援役割을 해야한다고 強調했다.

2. 國際出版物 交換

1958年 부탁설에서 國際出版物交換 및 政府刊行物 交換에 對한 2回에 결친 協議會가 있었으며 그 協議會에서 探擇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첫번쩨 大會에서는 (가) 出版物交換 (나) 情報交換 (다) 複本도서의 交換(納本中 備置用을 除外한 殘餘分의 交換이必要)等이며

둘째번의 大會에서는 (가) 各契約國의 機能發揮 (나) 各契約國이 大會에서 探擇된 事項의 履行을 責任진다. (다) 各契約國이 所要經費를 負擔한다.

그러나 이 세미나에 參加한 國家中에서 中國과 뉴저랜드가 그 協議會를 批准하였고 이 두나라와 씨론만이 다음 事項에 裁

可하였다.

(가) 政府가 이 두協議會를 批准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遲滯없이 推進하도록 모든措處를 取해야 한다.

(나) 現在 國家交換센터가 없는 나라에서는 國立도서관에서 이러한 목적을 考慮하여 設置計劃을 해야한다.

(다) 政府는 國家交換센터의 設立을 爲한 必要한 財政 및 施設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라) 이 센터에서는 可能한限 多은 政府刊行物은 勿論 非政府刊行物도 取扱해야 한다.

交換센터의 重要性은 認定하나 交換物의 到着이 遲延되느니 或은 도서관外의 交換物이 뒤로 차지하는 交換센터를 多額의 運營費用을 消費하면서 구태여 存續시킬必要가 있느냐 等의 否認論者도 있었으나 유네스코側은 6個月前에 國際交換圖書目錄 發刊事實까지 例舉하면서 끝내 交換센터의 設置를 力說하자 적은 國家들은 經濟的 및 技術的으로 微弱하나 유네스코에서 積極協力해서 設置指導를 하라고 呼訴하는 後進國家들의 苦衷의一角이 여기에서도 露呈되었다.

유네스코는 各國의 實情을 詳細히 連絡하면 各當該 政府當局에 建議하겠으며 또한 特殊한事項이 있으면 協力事項을 明白히 하여 政府를 通해서 要請하면 最善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色다른 좋은 한例는 美國과 印度는一般的인 圖書 및 資料交換은 勿論 圖書館의 責任管轄이지만 文化協定의 一環으로 政府에 關한 資料 및 도서 交換에 限한 政府刊行物 交換協定을 따로 締結하여 施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特異한例

로서 文化面 뿐만아니라 行政全般的인 面에서 協助의 効力이 클 것이다.

3. 國立도서관의 書誌活動

國立圖書館은 그 나라의 書誌活動에 奉仕하고 調整하는 責任을 지고 있으며 그 代表的인 業務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論及되었다.

(가) 印刷物·視聽覺資料 및 로마字로 表記된 것 등을 포함하는 最近에 刊行된 모든 資料의 國家書誌目錄作成

(나) 邇及書目錄作成

(다) 主題別 邇及圖書目錄作成

(라) 圖書館의 綜合目錄作成

(마) 國家 및 國際書誌計劃에의 寄與

(바) 定刊物 索引작업

國家書目은 손으로 쓴 것인데 印刷되었던 간에 그 나라에서 刊行되는 모든 도서를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 包含된 資料의範圍는 國家納本決에 依存해야 한다.

萬一 로마字 表記를 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基本表記法을 使用해야만 되는 것이 原則이다.

小規模의 國家書誌를 出刊하는 것이 問題가 될 때는 하나의 學術誌로서 刊行되어도 無妨하다.

書誌活動에 參考가 되는 國家出版物의 情報을 提供하는 Asian Bibliography를 拿下機構인 ECAFE에서 出版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언제나 書誌目錄出版에 있어서 必要한 情告나 指導와 協助를 할 充分한 準備가 되어 있다. 또한 資金을 投資할 수 있는 財團도 많이 있고 그들의 關心은 COLOMBO計劃下에 U. S. Bilateral Aid에 依해서 出版의 可能性이 있다고 했다.

完全한 國家書誌의 出版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亞細亞·太平洋地域의 도서관들은自己나라는勿論 그 地域에 關係되는 書誌的 資料를 選定할 特殊한 責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서지적 資料에 있어서는 구태어 書評까지 불일 必要가 없으나 註釋과 그 出版物의 形態는 밝혀야 할 것이다.

遡及國家書誌目錄을 再編輯하는데 있어서의 困難한 點은 資料의 起源國家에서 이미 그 資料를 찾을 수 없는 境遇와 國立도서관이 그 일을着手하기에 充分한 設備가 되어 있지 않는 點들이다. 大概의 소급서지는 서지활동을 하고 있는 海外도서관의 目錄에 依해서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지작업을 할려고 하면 他國도서관의 協助를 求해야 할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境遇에 따라서는 關係되는 그나라에直接가서 資料를 參考함도 必要하다.

또 하나의 困難한 點은 研究論文의 綜合目錄을 作成하는 일이다. 그것은 너무 分量이 많다는 것이 다루기 어려운 點인데 이것은 主題別 部分目錄을 作成함이 하나의 解決策이 될 것이다.

定期物의 綜合目錄은 같은 타이틀로서 繼續 發刊되는 것이니 그렇게 複雜한 問題는 아니다. 稀貴도서와 古書(西紀 1500 年 以前에 刊行된 册)는 綜合目錄을 하기에 適合한 資料들이다.

國家書誌目錄은 國內는勿論 國際的 要求에도 必要不可缺의 重要한 것이니 아직 發刊되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는 早速히 發刊되어야하며 이에 對한 費用은 그나라 政府에서 負擔해야 하고 유네스코에서는 기술(人力)援助를 擔當하라는 強力한 主張이 있었다.

印度國立도서관에서는 政府刊行物 및 非政府刊行物의 國家書誌를 別途로 作成하였는데 그 理由는 政府刊行物의 使用途가 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合本與否는 各國 事情에 따라 할것이나 國家書誌目錄 사업에 對하여 유네스코에서 協力하라는 主張에 유네스코는 援助內容 및 各國의 能力程度도 同時에 表示하면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國家書誌 및 要員養成問題에 對해서 美國에서는 一部 國家에 이 機會를 提供하여 司書研究員에게 施設도 提供하는데 이 計劃은 해마다 事情이 다르다고 했다.

書誌作成時に 書評을 記入하지 말고 內容 정도만을 記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自國에 關한 國外書籍의 選定圖書目錄을 作成했는데 이는 成功的이 있으니 各國에서도 이를 採擇한다면 國立도서관이 이사업을 擔當해야 한다고 했다. 他機關에서 擔當한 例도 없지는 않으나 그 信憑性外에 技術的條件으로 擁當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으며 特히 후진국에서는 그위치로 보아 國立도서관이 선정도서目錄을 作成해야 한다는 意見들이었다.

美國에서는 이 機能을 中止해다는데 그 理由는 書籍價值判斷의 곤란성 및 必要性的 稀薄에서라고 했고, 印度에서도 書籍의 多樣性 業者の 關心度(認定을 爲한 政府의 中立性) 政府人事의 複雜性(移動頻繁) 때문에 甚히 困難하다고 했다.

오스트랄리아 代表는 各國形便에 따라 適當히 할 것이나 本會議에서 作成을建議해두는 것이 各國에서 本事業의 重要性認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스

라엔代表는 國立도서관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機關에서 혼히는 政治 또는 宗派團體에서 할 수 있는데 이 境遇에는 더욱 危險하며 比較의 中立性維持가 可能한 國立도서관에서 해야 한다고 建議를 主張했으나 議長은 비엔나 大會에서도 採擇된 事項으로서 구라파國家도 履行하지 못하는데 亞細亞地域國家에서 可能할 수 있겠는가? 實質적으로 履行不可能한 建議는 避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各國事情에 맡기기로 했다.

4. 目 錄

1961年 目錄原則에 關한 國際會議에서는 團體名 記入에 關한 原則이 論議되었다. 例를 들면 어떤 出版物에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름으로 단체명을 잡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게 한다면 現在 使用하고 있는 많은 地名下의 記入은 團體名으로 바꾸어 지거나 또는 地名 앞에 團體名을 記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原則를 適用하는데 있어서 現在의 立場이 어여한 困難한 點이 있는가의 質問이 있었는데 現在 使用하고 있는 目錄이 새로운 規則을 全般的 或은 部分的으로라도 받아 들일 可能性에 對해서 論議되었다.

1961年的 巴리原則이 多種의 言語를 가진 亞細亞에 適合한 方向으로 研究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다. 이러한 主題에 關한 I F L A委員會는 이것을着手하는데 適當한 機構가 될 것이다.

國家書誌와 마찬가지로 海外으로 보내지는 目錄카—드는 로마字表記를 統一해야 한다는 것에 同意했으며 國立도서관은 目錄原則에서 合意된 點과 特殊言語에도 適合할 수 있는 限 巴리原則의 適用을 紹介할 責任을 지고 있는 것이다.

5. 立法機關에의 參考奉仕

立法機關에 對한 參考奉仕의 形態는 實際上의 資料까지를 포함한다. 즉 주어진 어떤 문제에 關하여 討議되었던 사항이나 또는 이미 先決된 사항에 關한 立證資料를 포함하여 입법기관 內外에 있어서의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까지도 협조를 하는 것이다.

情報は 恒常 簡略한 通知로서 提供해야 하고, 參考奉仕者는 最高로 組織된 基礎參考資料에 精通하여야 하며, 마이크로複寫의 資料와 活用한 文書連絡에 依하여 廣範圍한 多種의 資料를 베티칼파일에 增補해 두어야 한다.

立法機關에 對한 參考業務 擔當職員은 꼭 도서관學을 專攻한 者로서만 構成할 必要是 없다. 다른 分野를 專攻한 사람이라도 좋으나 擔當者는 無事公平하며 秘密이 없어야 한다. 如何한 方法으로도 公務에 直接 關與하여서는 안된다.

美國이나 日本에 있어서는立法機關에의 參考奉仕업무가 國립도서관의 완전한 부분으로서 되어있으나 그것이 꼭 적절한 方法이라고는 할 수 없다.

發展된立法關係 참고 업무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以外의 機能을 하게 됨으로 도서관以外의 다른 機關에서 해야할 性質이라고 生覺할 수도 있는 것이다.一般的으로 國立도서관에서 取扱되는 것이 普通이나 國會事務處안에 別途로 이러한 部署를 두거나 혹은 獨立된 機關으로서 組織되어 管理되고 있는데도 있다.

한편으론 國立도서관내에立法關係 參考部를 두고 있는 곳은 大端히 좋은 경우라 하겠다. 그것은 더욱 經濟的이며 二重

으로 册을 사는 浪費를 避할 수 있으며 또한 職員도 그 能力에 따라 適材適所에 配置할 수 있는 유리한 點이 있는 것이다.

立法關係參考業務에 있어서 그 規模만 크면 다되는 것이라고 生覺해서는 안되어 오히려 잘 運營되는 작은 規模로서 必要한 資料를 供給할 수 있는 位置에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다.

써어비스 機關은 恒常 써어비스 對象에 꼭 알맞는 組織을 하여야 한다. 例를 들면 大機關에만 適合한 아이디어와 運營方法을 그대로 採擇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것은 그 目的이 꼭 맞고 滿足을 줄수 있는 組織을 해야한다. 職員도 또한 組織에 對한 自己의 義務에만 專念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안된다.

써어비스에 있어서 管理보다는 場所가 더 重要하다. 立法機關에의 參考업무가 迅速히 運營되고 利用者들에게 가까이 있음으로서 그 本來의 目的을 達할 수 있다.

議員에게 演說에 必要한 資料를 迅速히 提供하는 것은 特히 開會中에는 數分동안에 써어비스를 해야 할 境遇가 많으므로 매우 重要하다.

萬若 國立圖書館이 立法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位置하고 있다면 立法關係參考 업무를 爲한 諸般 準備를 갖추어 가까운 곳에 分館을 두는 것이 好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若干의 複本이 必要하게 되므로 國立도서관은 그豫算을 鑑案하여 經濟的인 運營方針을 세워야 한다.

立法關係 參考部가 立法部에 依해 設立管理될 境遇나 國立도서관의 管理下에 있는 分野인 境遇나를 莫論하고 이 兩圖書館은 相互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例를 들면 아무리 時急한 資料일지라도 亦是 國立도서관 本部에서 購入하여 整理한 뒤에 參考部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資料는 便利할 때에 提供되는 것이 아니라 即時에 供給되어야 한다.

(次號계속)

鄭 驍 謨 錄

圖 書 分 類 法 概 論

서울, 崇義社,

1964.

252P. 21cm

<欲, 300원. 全國書店에서 販賣中>